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의거하여 제출된
제 7 회 · 제 8 회 · 제 9 회
일본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2014 년 7 월

보고단체명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s (LAZAK)

목차

1. 보고 단체에 대하여
2. 서론
3. 국민연금 제도로부터의 재일 코리안 배제
4. 외국인, 주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공무취임권의 제약
5.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부터 배제
6. 재일 코리안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 스피치

I. 보고 단체에 대하여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는 재일 코리안 변호사 및 사법수습생에 의하여 2001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는 100명을 넘는 재일 코리안 변호사 및 사법수습생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이라 한다.)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선조가 한국·조선계이며 귀화 후에도 코리안으로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국적 보유자를 말한다.

LAZAK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와 민족적 인권 보장을 지향하여, 재일 코리안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재판에서 법적 지원을 하여 왔다. 또한 재일 코리안에 관한 서적 출판, 해외 코리안 변호사와의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평가되어 2007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II. 서론

1. 재일 코리안의 역사적 경위

2014년 현재, 일본 국적 보유자를 포함하여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코리아계 주민의 수는 약 100만명 정도라고 추측된다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안의 수에 관한 공적인 정부통계는 없다.). 이 중 2013년 12월 시점에서는 약 43만명의 코리안이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과 생활하고 있다.¹ 약 43만명 중 약 37만명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와 그 자손이며² 일반적인 영주자격과는 구별된 특별영주자격이 인정되고 있다.³

상기와 같이, 특별영주자격을 지닌 재일 코리안(약 37만명)은 현재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910년에 일본에 의한 조선 반도 식민지 통치개시된 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일본 국적을 지니고 있던 자와 그 자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강화조약 발효 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의 국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동 조약이 재일 코리안과 재일 대만인 (모두 일본의 구 식민지)의 일본 국적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동 조약의 발효로 인해 재일 코리안 및 재일 대만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박탈조치 (1952년 4월 19일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 의한 조치)는 일본에 거주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박탈조치는 당시의 일본 인구 (약 8500만명)의 일부 (약 50만명)에게만 그들이 조선 및 대만 출신자라는 민족적·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저격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박탈조치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발효 전의 조치라고 하여도 인종 차별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 박탈조치는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이라고 하는 정부 통달에 의한 것 뿐이며 법률에 의거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적의 취득·상실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일본국헌법 제 10조에도 위반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관하게 이 국적 박탈 조치를 시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

이러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코리안은 하룻밤 사이에 일본 국적을 상실당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일 코리안의 인권을 제약하였다. 예를 들면 재일 코리안도 일반 외국인과 같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사회 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적 조항이 설치되고 또한 많은 공직에서 재일 코리안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외국인 배제의 논리는 민간에 있어서 국적 및 민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1년에 1945년의 일본 패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의 구 식민지 출신자 (코리안 및 대만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특별영주자격 제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도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¹ 법무성 HP, 재류외국인통계 2013년 12월판, 표 01-1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8467>>를 참조.

² 상동

³ 일본에는 영주자격으로 일반영주자격과 특별영주자격의 두종류가 있다. Miki Y. Ishikida, *Living Together: Minority People and Disadvantaged Groups in Japan*, 3-2-1 (2005) 를 참조. : http://www.usjp.org/livingtogether_en.html#mozTocId637851.

⁴ 하나의 예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 36년 4월 5일 민집 15권 4호 657 페이지 등.

사회 보장과 공무 취임 등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다. 더구나 1945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모두가 특별영주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에서 출국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일부는 일반영주자격이나 그 외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일본 국적은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국적법은 엄격한 혈통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적법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외국적인 아이는 일본에서 출생하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952년에 민족적·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코리안의 자손은 양친의 어느쪽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게 된다. 일본 국적법의 혈통주의는 민족적·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재일 코리안을 일본 국적에서 배제하려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로 일본의 국적법은 민족주의적·종족주의적인 국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적법 하에서는 4세, 5세가 되어도 외국적인 채로 살아가는 재일 코리안의 예도 있다. 실제로 1952년에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코리안 중에는 100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여 온 가족도 있다.

물론 일본의 국적법에도 귀화 절차 규정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귀화절차도 또한 민족주의적·종족주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즉, 귀화의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일본풍의 성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일본 민족에 민족적·문화적 동화를 귀화 조건으로 하는 운영을 하여 왔다.⁵ 일본 사회에서는 귀화를 법적인 국적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민족에 민족적·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구 종주국이 구 식민지 출신자의 귀화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설치한 것에 비하여 일본의 국적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재일 코리안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하는 구별은 인종차별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시민과 비시민과의 구별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1조 2항). 그러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영주자나 이에 준하는 재일 코리안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1조 2항의 적용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영주자나 이에 준하는 재일 코리안의 구별적 취급은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거한 구별이며 “인종차별” (1조 1항)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기와 같이 이러한 재일 코리안은 한편으로 1952년에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후로도 민족주의적·종족주의적인 일본의 국적법 및 동법의 운용에 의하여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1952년 이후, 재일 코리안 및 그들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과, 일본 정부에 의한 국제인권규약, 난민조약의 비준 등으로 인하여 재일 코리안의 법적 지위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기와 같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회 보장 분야나 공무 취임 등 많은 분야에서 특별영주자인 재일 코리안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기의 이유로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

3. 최근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악화

⁵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 소견(2010년 4월 6일), CERD/C/JPN/CO/3-6 (“CERD 2010 Concluding Observations”), पैरुग्राफ 16 참조.

일본 사회에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코리안에 대한 멸시 감정·우월감이 양성되어 왔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코리안에 대한 차별 감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을 일본 정부가 태만해 왔다는 점과 함께 지금도 일본사회에는 코리안에 대한 차별 감정이 뿌리깊게 남겨져 있다.

이러한 오래전부터 남겨져 있는 코리안에 대한 차별 의식에 더하여 최근 일본과 북한 및 한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 등의 사정을 배경으로 최근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이유로 새로이 도입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부터 조선학교만 배제하였다. 또한 배외주의 단체의 재일 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크라임 및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심각화되고 있다.

4. 본 보고서의 구성

LAZAK의 회원 변호사는 다양한 재일 코리안의 인권에 관한 소송에 대리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LAZAK의 회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로서 관여하여 온 인권문제 중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문제, 구체적으로는 (i)재일 코리안 고령자의 연금 제도로부터의 배제, (ii)외국인에 대한 공무 취임의 제한, (iii)조선학교의 무상화로부터의 배제 및 (iv)재일 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다.

LAZAK 으로서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재일 코리안이 직면하는 인권 침해에 개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기대한다.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배제

I. 문제의 요점

198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재일 한국·조선인 및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의 재일 한국·조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령복지연금, 장애기초연금의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재일 한국·조선인의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조약 제 5 조(e) (iv)에 위배된다. 일본정부는 상기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도록, 조속히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 일본정부의 보고내용

정부보고서 단락 121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회, 제 2 회 보고서에는, 국민연금법에 관해서는 국적조항이 없으므로, 인종, 민족 등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⁶. 하지만, 제 1 회에서 제 6 회까지의 보고서와 같이,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동 장애자가 국민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III. 법적논의

1. 관련조문 및 일반적인 권고

무연금문제와 가장 깊이 관계가 있는 조문은, 제 5 조(e) (iv)이다.

일반적 권고 30 제 2 항은, “제 1 조 제 2 항이, 기타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되어, 규정되고 있는 권리 및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규정한다⁷. 또한, 일반적 권고 30 제 7 항은, “입법의 실시가 시민이 아닌자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2. 과거의 유엔위원회의 지적사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8년 10월 31일, 제 5 회 일본정부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에서,

“위원회는, 1982년의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의 철폐가 소급되지 않으며, 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중에 최저 25년간 연금제도에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 주로 1952년에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조선인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으로부터 국적조항이 철폐된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1962년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 장애자 또한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제 2 조 1 및 제 26 조)”

⁶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1 회, 제 2 회 정부정기보고(2000년 1월 13일), CERD/C/350/Add.2 (“Japan CERD Report 2000”) 단락 82

⁷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적 권고 30, 단락 3

⁸ 상동, 단락 7

라고하여⁹, 일본정부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권고를 하였다¹⁰.

또한, ‘현대적인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자인 도도디엔씨는, 2006년 1월 24일, 2005년 7월의 일본방문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취로 연령시에 존재하였던 국적조항에 따라 연금 급부를 받을 수 없는 70 세이상의 한국·조선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¹¹.

IV. 배경 사정

1.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재일 한국·조선인 장애자의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의 경위

1959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적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그 대다수는 주로 1952년에 일본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한국·조선인이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일본이 1981년에 난민조약을 비준한 함에 따라, 1982년에는 국민연금법으로부터 국적조항이 폐지되었고, 외국인이라고해도 25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85년의 법개정에 따라 25년간의 연금수급자격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연금을 수급하는 길이 열렸으나, 1986년 4월 1일 시점에서 60세이상인 외국인은,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또한, 1959년의 국민연금법 하에서는 일본인 장애자에게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외국인은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1982년의 법개정에 의해 국적조항이 철폐되었으나,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 즉,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0세이상의 외국인은 장애기초연금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정부가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공개하였던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의 추이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중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다른 외국인 차별과 다른 것은,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¹². 즉, 재일 한국·조선인만이 일본인과 같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외국인 고령자의 대부분은 재일 한국·조선인이었다. 예를들면, 2013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조차, 일본에 거주하는 80세이상의 외국인 30,630명중 25,721명이 한국·북한국적 보유자 였다¹³. 또한, 장애자에 관한 비교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1982년 1월 1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0세이상의 외국인의 대부분은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추측된다.

상기의 배제조치에 따라, 2002년 7월시점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는 약 2만명 및 재일 한국·조선인장애자 약 5천명이 무연금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⁴. 하지만, 일본정부는, 무연금생활 상황에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⁹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본국에 관한 총괄소견 (2008년 10월 30일), CCPR/C/JPN/CO/5, 단락 30

¹⁰ 상동

¹¹ 유엔경제, 사회이사회에 제출된,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관한 특별 보고자 도도디엔씨에 의한 보고(2006년 1월 24일) E/CN.4/2006/16/Add.2 at ¶56

¹²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7회, 제 8회, 제 9회 일본정부보고(2013년 1월 14일), CERD/C/Japan/7-9 (“Japan CERD Report 2013”), 단락 35

¹³ 전계각주 (1), 표 02-1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8467>>

¹⁴ 무연금장애자에 관한 “사카구치시안” (2002년 7월)

수나 현재 상황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다수는 출생시로부터 가지고 있던 일본국적을 1952년에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구 식민지 출신자로, 그들에 대한 형식적인 국적을 이유로한 구별은,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출신자라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인종차별이다. 그들은 일본국내에서 출생하여,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고, 일본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고, 일본인 주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출신자라는 이유로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재일 한국·조선인의 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인종차별이다

상술한 일정한 외국인 고령자 및 외국인 장애자를 국민연금제도로 부터 배제하는 조치의 영향은, 주로 구 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미치고 있다. 이는, 민족적 출신에 의하여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영향” (일반적 권고 14 제 2 항)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¹⁵.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유지나 연금의 건전한 운용의 목적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연령이상의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면, 일본에 단기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정기간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인정된 정주외국인에게는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던지, 일본정부가 1952년에 발표한 통달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한국·조선인에게는,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의 부당성은, 일부 일본인에 대하여 강구되었던 구제조치와 비교하면 더욱 더 명백해진다. 예를들면, 오가사와라는 1968년에, 오키나와는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될때까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으므로, 두 지역의 주민은 국민연금제도가 발족된 1959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오가사와라 및 오키나와의 일본복귀후, 각 주민에 대하여, 그 동안의 보험료를 국고부담으로 면제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지 못하였던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하여, 2003년에는 북한으로부터 귀국한 납치피해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각 경과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을 돌아보아도, (1) 2005년에는 특별장애자급부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학생 및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이 임의가입이었던 관계로,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중에 장애를 진 무연금 장애자의 구제가 도모되었고, 또한, (2) 국민연금제도 발족후에 영주귀국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하여, 2008년부터 실시된 노령기초연금 만액 지급을 위한 미납 보험료 국고전보조치가 강구되어, 국민연금가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여 무연금 또는 만액미만이었던 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실시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인을 대상으로한 구제조치의 실시와는 반대로, 일본정부는 임의가입도 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무연금상태에 있었던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장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국·조선인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¹⁵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적 권고 14, 단락 2

개선하지 않았다.

3. 국내에서의 사법적인 구제가 다해진 것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장애자는, 국민연금의 국적에 의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국헌법 제 14 조의 평등원칙, 자유권규약 제 26 조 및 사회권 규약 제 2 조제 2 항의 평등보호조항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일본국내의 재판소에 사법구제를 구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복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최고재판소의 심리까지 거쳤으나 모든 소송은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¹⁶.

어떠한 판결에 있어서도,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대다수의 재일 한국·조선인이 구 식민지출신자로, 1952 년에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였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러한 재일 한국·조선인 또한 통상적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게다가, 입법부에는 국민연금법개정의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일부의 외국인의 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헌법에도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¹⁷.

V. 제언

이상의 문제점을 전제로, 일본정부는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연령요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¹⁶ 2007 년 12 월 25 일,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여, 무연금고령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오사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였다(판결집미게제). 오사카 고법은, 2005 년 12 월 25 일 및 2009 년 2 월 3 일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2014 년 2 월 6 일, 최고재판소는, 무연금고령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후쿠오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였다(판결집미게제).

¹⁷ 예를들면, 오사카고법 2006 년 11 월 15 일등(판결집미게제).본 판결은, 2007 년 12 월 25 일에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외국인, 주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공무 취업 제약

I. 문제의 요점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정당한 목적없이 일정 공직의 임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임용을 허용하는 공직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적없이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무 취업에 대한 제한은 특히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과의 관계에서는 민족적 출신 혹은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하는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구 식민지 출신 자와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의 공무 취업에 대한 제약을 폐지하여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정부 보고서 패러그래프 48 이 인용하는 제 1 회 · 제 2 회 보고서 패러그래프 50 에는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공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재일 한국 · 조선인의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도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¹⁸

III. 법적 구성

1. 관련 조문 및 일반 권고

재일 코리안의 공무 취업 제약에 가장 깊게 관련된 조문은 제 2 조 1 (c),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이다.

일반 권고 30 제 29 항은 고용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한 향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 이라고 규정한다.¹⁹ 또한 일반 권고 30 제 33 항은 “노동 협약 및 노동 요건 (차별적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고용 규칙 및 관행을 포함)에 관하여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을 규정한다.²⁰

2. 과거 유엔 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2010년 3월 9일 제 3~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 소견 15에서 (2010년 제 76 회기 · 일본 정부 보고서 심사), “가정 재판소의 조정 위원은 공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고,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비 일본 국적자가 분쟁에서 조정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공적 생활에서의 비 일본 국적자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5 조)”²¹ 라고 하며 일본 정부에게 “조정 처리를 하는 후보자로서 추천된 능력있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가정 재판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약국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 “ 하였다.²²

¹⁸ 전계 주(6), 패러그래프 30

¹⁹ 전계 주(7), 패러그래프 29

²⁰ 전계 주(7), 패러그래프 33

²¹ 전계 주(5), 패러그래프 15

²² 상동

IV 배경 사정

일본에서는 주로 다음 장면에서 외국인의 공무 취임에 제약이 있다.

1. 관리직에 승진 제한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외국인 공무원의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 재판소는 이러한 취급을 시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자격을 가진 재일 코리안의 보험직이 관리직 전형 시험의 수험을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안에서 최고 재판소는 “주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형성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중요한 시책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일 “ (“공권력 행사 등 지방 공무원”)에 외국인이 취임하는 것은 일본의 법체계가 예정하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²³ 그리고, 지방 공공 단체는 “공권력 행사 등 지방 공무원의 직무와 이에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직위를 포함한 일체적인 관리직 임용 제도” 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제도에서 “일본 국민인 직원과 재류 외국인인 직원” 을 구별하고 일본 국민인 직원에 한하여 관리직에 승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치는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고 하였다.

또한 국립 학교의 외국 국적 교원에 대하여 문부과학 대신은 1991 년에 지방 자치 단체에 외국인 교원 채용 전형 시험 수험을 인정하는 통달을 냈지만 그 신분에서 “당연한 법리”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본인 교원에 적용되는 “교사” 가 아니라 “임용 기한을 정해두지 않는 상근 강사” 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직에 등용되는 신분은 ‘교사’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외국인 교원은 관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고 동등한 자질을 겸비한 외국인 공무원을 관리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또한 외국인 공무원의 대부분은 1952 년에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구 식민지 출신인 재일 코리안과 그 자손이지만, 그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일본인과 같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 코리안에 대한 별도의 취급은 형식적으로는 국적에 의한 구별 문제로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민족적 출신에 따른 차별이며,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에 위반한다.

2. 조정 위원

일본에서는 민사 사건 및 가사 사건은 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조정 제도에서는 재판관 1 명과 민간에서 선정된 조정 위원 두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조언과 알선을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변호사인 조정 위원은 재판소의 규칙에서 변호사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최고 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²³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17년 1월 26일 민집 59권 1호 128페이지

또한 간이 재판소의 소송 절차에서,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해를 시도하기에 있어서 사법위원에게 보조하게 하거나 사법위원을 심리에 참가시켜 사건에 대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법 위원은, 실무 상 간이 재판소에서 변호사회에 추천 의뢰를 하고 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사법위원으로 위촉 되는 것이 통례이다.

2003년 3월, 효고현 변호사회가 고베 가정 재판소에 한국 국적인 회원을 가사 조정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임명을 거부당했다. 또한 2003년 3월에 도쿄 변호사회가 제일 코리안 변호사를 사법위원에 추천하였으나, 임명을 거부당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22일 현재까지 각지의 변호사회가 총 25회, 총 31명의 외국인 조정위원 또는 사법위원 (외국인은 모두 제일 코리안이다.)으로 추천하였지만 모든 임명을 거부당하였다. 최고 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시책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가 취임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 조정위원 및 사법위원은 이러한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취임을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는 입장을 답습하고있다.²⁴

조정위원과 사법위원의 직무는 모두 법적 지식과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합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재판관에게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정을 할 뿐 공권력의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회제도나 문화에 정통하고 높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정위원과 사법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정위원으로의 임명을 거부한 제일 코리안은 모두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본의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로서 그(녀)들의 조정위원 임명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인 제일 코리안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하는 다른 취급은 민족적 출신 혹은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인종 차별에 구성된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3. 기타 공직에서 배제

상기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소방 직원 중 소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취임하는 것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긴급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 공무원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인권 옹호위원,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의 공직은 원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정주 외국인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에서 구 식민지 출신인 제일 코리안을 배제하는 것은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에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

V. 제언

이상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LAZAK 으로서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권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 지방 공무원 관리직에 외국인이 승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행정 규칙 및 제도 운용을 철폐하여야 한다.

²⁴ 일변연, “외국인 조정 위원·사법 위원 임용을 요구하는 의견서”

<http://www.nichibenren.or.jp/en/document/opinionpapers/20090318_2.html>. 이 본문 중에는 일변연이 조정위원·사법위원의 채용에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조회한 결과 최고 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 임용과로 부터 본건 회답을 받았다고 한다 (2008년 10월 14일 일자).

- 조정위원, 사법위원, 소방 직원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의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행정 규칙, 제도 운용을 철폐하여야 한다.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의 배제

I. 문제의 요점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체의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 있다. 관련된 조치는 재일 코리아인이라는 민족적 출신에 의거하여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체는 이와같은 차별적 취급을 시정해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일본 정부의 보고서는 인증차별철폐조약 제 2 조 제 5 항 (4) 에 관해 132 항, 133 항에서 “외국인학교는 그 일부가 각종학교로서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고 있으며 그 자주성은 존중되고 있다.”¹⁸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10 년 4 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립·사립고교 등의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제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 를 개시하고 있다.”¹⁹ “이 제도는, 1)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2) 중등교육학교 (후기 과정, 3)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4) 고등전문학교 (제 1 학년부터 제 3 학년), 5) 전수학교 고등과정, 6) 각종학교로 되어있는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의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두는 것으로 문부과학 대신이 지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제도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또한 각종학교로 되어있는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둔 것으로는, a)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b)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c) a 및 b 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고등학교의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문부과학 대신이 지정한 것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⁰ 고 보고하고 있다.

2014 년 3 월, 유엔인권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정부회답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의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해본 결과 조선학교는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인사, 재정면에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정요건의 하나인 『법률이나 규칙에 따른 적절한 학교경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제도의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결론했다.²¹ ...장래적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면 조선학교의 대상 적격이 재검토 될 여지는 있다.”²² 고 설명하고 있다.

III. 법적 윤곽

¹⁸ 전개 주 (6) , 패러그래프 1 3 2.

¹⁹ 전개 주 (6) , 패러그래프 1 3 3.

²⁰ 전개 주 (6) , 패러그래프 1 3 4.

²¹ The Government of Japan, Replies of Japan to the List of Issue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March 6, 2014), CCPR/C/JPN/Q/6/Add.1. (“2014 Japan’s Reply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List of Issues”) at ¶29.

²² *Id* at ¶30.

1. 관련된 조문 및 일반적 권고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 가장 깊이 관련된 조문은 제 2 조 1 항(a) 및(c)、제 5 조(e) (v)이다.

또 일반적 권고 30 제 29 항은 “교육의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한 향유를 가로막는 장애를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³

2. 과거 유엔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0년 3월 9일 제 3~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 22 에서 (1) 체약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조선계, 중국계의 학교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보조금, 세계상의 우대조치에 관한 다른 취급 및, (2) 체약국에서 현재 국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공립 및 사립 고교, 전수학교 및 고교에 상당하는 과정을 둔 다양한 기관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법제도 변경에서 북한의 학교를 제외하는 것을 시사하는 복수의 정치인의 자세(제 2 조 및 제 5 조)를 포함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개념을 표명하였다.²⁴

또 위원회는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적 권고 30 에 비추어, 교육기회 제공에 있어 차별이 없을 것, 체약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이나 의무교육 취학에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체약국이 확보할 것”, 및, “소수그룹이 자신의 언어에 관한 교육이나 자신의 언어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⁵

또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 5월 7일에 낸 총괄의견 패러그래프 27에서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제·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차별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해 개념을 표명”하였다.²⁶ 거기에서 위원회는 “차별의 금지는 교육을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시에 즉각 적용되어 모든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금지의 사유에 포함할 것을 상기하고 체약국에 대해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는 조선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를 권고하고 있다.²⁷

IV. 배경 사정

1. 조선학교

제 2 차대전 종료 후,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조선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조선학교는 일본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조선어로 실시되며 조선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사나 일본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본의 교육제도와 일정한 상사성을 가지고 있다.

²³ 전계 주 (7)、패러그래프 29。

²⁴ 전계 주 (5)、패러그래프 22。

²⁵ 상동

²⁶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소견 (2013년 1월 10일)、E/C.12/JPN/CO/3、패러그래프 16。

²⁷ 상동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쓰인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교육시설을 ‘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1 조, 34 조, 62 조)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이 모국어로 독자의 교육을 하는 시설은 ‘학교’로서 나라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 교육에 유하는 교육을 하는 자는 ‘각종학교’로서 자동차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함으로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의 대부분은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각종학교’라는 지위에 놓여있다.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에서 나오는 조성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체에서 일정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보조금 액수는 자치체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 액수는 지방자치체가 일본의 학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해 대폭적으로 적다.

이외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1)조선학교의 졸업생에게는 당연히 일본의 대학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2)구미계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한 기부금은 세계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 조선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이러한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각종의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²⁸

2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 배제

I 에 기재된 대로 일본에서는 2010 년 4 월부터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가 실시되어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제도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조선학교만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고교무상화법 시행 당초, 외국인학교는 II. 의 일본정부 보고서 기재의 (a)~(c) 의 3 항목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 적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조선학교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어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b)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c) 가 규정하는 문부과학 대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점, 지정 신청기한인 2010 년 11 월 30 일까지 10 교의 조선학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 대신은 2 년이상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c) 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조선학교보다 늦게 신청한 다른 외국인학교 2 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2013 년 2 월 20 일, 문부과학 대신은 (c) 를 삭제하는 성령 개정을 하여 조선학교를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령 개정에 즈음하여 문부과학 대신은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것,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교육내용, 인사, 재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 II 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면 조선학교의 대상 적격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²⁹, 시행규칙 개정이 북한과의 정치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명백하다.

²⁸ 전계 주 (5)、패러그래프 2 2。

²⁹ 전계 주 (2 8)、패러그래프 2 9。

상기의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조선학교 고급부 졸업생 3000 여명이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2014 년 7 월 24 일 현재에도 1800 여명의 고교생이 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같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 재일코리안 학생의 배제는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에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동들에게는 좌우할 수 없는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정치정세를 이유로 이와같이 차별적 취급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

3. 지방자치체의 보조금에 대한 영향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도도후현이나 시정촌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오랜기간 지급되어왔으나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의 배제를 배경으로 하여 보조금 중단·감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사카후 및 오사카시가 2011 년도에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시초로 보조금 중단이나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역내에 조선학교가 있는 27 도도후현 중 8 도후현이 2013 년도 예산안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시정촌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보조금 불지급에 즈음하여 많은 자치체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어 불지급 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아이들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국외의 정치적 사건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 코리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V. 제언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릇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특정의 국가간의 외교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점을 근거로 LAZAK 로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

-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지방자치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폐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재일코리안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헤이트 스피치

I. 문제의 요점

근래, 민족적 소수자, 주로 재일 한국·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크라임과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헤이트 스피치의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아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의 자정 작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제 4 조 (a) 및 (b)의 유보를 철회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일본 정부는 제 4 조 (a) 및 (b)에 대해 유보를 부하고 있으며, 2013 년 1 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유보를 철회하고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 등에 대해 정당한 언론까지도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처벌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재의 일본이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와 인종 차별의 선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³⁷ 하다고 하며, 법무성 인권옹호국에 의한 계몽 활동이나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³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III. 법적 구성

1. 관련하는 조문 및 일반적 권고

헤이트 스피치에 가장 깊게 관련하는 조문은 제 2 조 제 1 항 본문 및 동 조항 (b)(d), 제 4 조 및제 5 조 (a)(b)이다. 또한, 제 4 조 (a), (b)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헌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 4 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유보를 붙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권고 35 는 인종적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어프로치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 권고 30 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있다.

2. 과거 유엔 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2010 년 3 월 9 일, 제 3 회 ~ 제 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 13 에서, 제 4 조 (a) 및 (b)의 유보 범위의 축소 및 가능하면 유보의 철회를 시야에 넣고 검증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³⁹ 또한, 위원회는 다음의 3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⁴⁰

(a) 본 조약 제 4 조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한 법률의 결여를 시정할 것

³⁷ 전계 주(12), 패러그래프 84.

³⁸ 전계 주(28), 패러그래프 80.

³⁹ 전계 주(5), 패러그래프 13.

⁴⁰ 상동

(b) 중요적 및 인종차별적 언론에 대해서는 관여자의 수사와 처벌을 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포함한 헌법, 민법, 형법의 관련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c) 인종주의적 사상의 유포에 반대하는 주의환기·의식계몽 캠페인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헤이트 스피치나 인종차별적 선전을 포함한 인종주의적 동기에 유래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 년의 총괄소견에서 “코리안 ... 등의 소수자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인종주의적 언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 및 현행 민법·형법의 구조 밑의 법적 수법으로는 이러한 언론으로부터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과격론자에 의한 시위 행동이 다발,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허대스먼트나 폭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고 했다.⁴¹ 특히,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3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⁴²

(a) 인종적 우월 또는 인종적 혐오를 창도하고 차별이나 증오, 폭력의 선동이 되는 모든 선전을 금지하는 것, 또한 그러한 선전의 유포를 의도하는 시위 행동도 금지할 것

(b) 반 인종주의의 의식 계몽 캠페인에 충분한 자금 분배를 실시하고, 재판관, 검찰관, 경찰관이 증오 및 인종적 동기에 유래하는 범죄를 인식하고 소추·처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c) 인종주의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소추 후 유죄라면 적절한 형벌이 과해지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IV. 배경 사정

1. 일본에서의 배외주의의 대두

2000 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배외주의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익명의 차별적 댓글이 넘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가두 시위와 집회가 늘고 있다.

배외주의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아,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위협에 넘친 시위와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회” (재특회)는 이러한 배타주의 단체의 대표격이다. 2006 년에 설립된 재특회는 이차대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별영주자격의 폐지를 목적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생활보호 수급자격 등의 다양한 권리 부여에 반대한다. 2014 년 7 월 24 일 현재 재특회의 회원수는 14,000 명을 넘고 일본 전국에 지부가 있다.⁴³

⁴¹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dvance Unedited Version), Japan, (July 24, 2014) CCPR/C/JPN/CO/6 at ¶12.

⁴² *Id.*

⁴³ 재특회의 웹 사이트는 <http://www.zaitokukai.info> 에서 접속 가능하다. 단 회원등록은 무료이며 메일 어드레스 이외의 개인정보(주소나 실명 등)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단체는 다른 배외주의 단체와 공동으로, 주로 조선학교와 코리아 타운 등의 재일 한국·조선인 커뮤니티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배외적인 시위와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배외 시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2. 사례 - 헤이트 스피치의 과격화”를 참조). 이들 단체는 사전에 웹 사이트에서 시위를 예고하여 참가를 호소하고 현장에서 과격한 폭언·폭행을 비디오 촬영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배외주의 단체의 대두를 용서해 온 배경 사정의 하나로서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근래에 이르러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강화해 온 것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시작된 2001년 당초부터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게 되어 인종차별의 처벌화나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의 권고가 이루어져 왔다.⁴⁴ 그러나 일본 정부가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인종차별적 정책이나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이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2010년 3월에 나온 “제 3회 ~ 제 6회 정부 보고서에 관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도 직접적·간접적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과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 방지 조치 실시를 포함 유사한 권고가 나와 있다.⁴⁵ 그 동안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부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적으로 밝혀진 것 등을 계기로 마스크에 의한 북한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보도가 가열하여, 2010년에 시작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무상제·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등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마스크 보도와 정부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강화는 배외주의 단체의 활동의 조장·촉진에 기여되고 있다.

2. 사례 - 헤이트 스피치의 과격화

재특회 등의 배외주의 단체는 도쿄 및 오사카의 코리아 타운 주변에 수백 명 단위로 모여서 헤이트 스피치를 이용한 시위와 데모를 해왔다. 연구자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만에도 일본 전국에서 적어도 360건의 배외적 데모 행진과 시위 선전차울 이용한 시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⁶

이러한 시위와 데모의 모습은 주최자들에 의하여 촬영되어 인터넷 상에 투고된다. 2014년 7월 24일 현재에 있어서도 그 많은 부분이 열람 가능하다. 이하 재일 한국·조선인을 공격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의 일부를 소개한다.

(1)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2009년 12월 4일, 재특회의 회원이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의 정문 앞에 몰려가서 마이크를 이용한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또한 조레대나 스피커 등 학교의 비품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⁷

⁴⁴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소견 (2001년 4월 27일), CERD/C/304/Add.144, 패러그래프 12.

⁴⁵ 전계 주(5), 패러그래프 9.

⁴⁶ 노리코에 넷 (のりこえネット) 웹 사이트<<http://www.norikoenet.org/fact.html>>를 참조. 노리코에 넷 (のりこえネット)은 재일 한국·조선인 인권 활동가와 진 수상, 변호사, 연구가 등을 공동 대표자로서 2013년 9월에 설립되었다.

⁴⁷ 재특회에 의한 조선학교 습격 사건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영어 자막 있음)에 관해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8C1NbntRWDI> 참조.

“조선학교, 이 따위는 학교가 아니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북한의 간첩 양성 기관”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하는 것. 인간과 조선인에서는 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 “니들, 똥이나 쳐 먹고, 반도에 돌아가”

재특회는 2010년 1월 14일 및 3월 28일에도 같은 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이용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를 할 때에는 경찰이 학교 주변에 모여오기는 했지만, 재특회의 행동을 묵인했다.

조선학교 측은 2009년 12월 21일에 재특회의 데모 참가자를 형사고소하고, 2010년 8월에 실형범 4명이 위력 업무 방해죄, 모욕죄, 기물 파손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2011년 4월에 교토 지방 재판소는 피고인들에 대해 1년 ~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부가되었다. 이 형량은 인종주의적 동기에 유래하지 않은 동종 사건과 균형하는 것이라 인종주의적 동기에 대해서는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재특회 및 그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과 장래의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있다. 2013년 10월 17일 교토 지방 재판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향후에 걸쳐 학교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의 시위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동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인종차별적 동기는 인종차별 철폐조약 제 6조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헤이트 스피치가 불특정한 집단 전체에 향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 없이는 현행 민법에 근거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이 판결은 2014년 7월 8일 나온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재특회 측이 상고하여 2014년 7월 20일 현재에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2) 한국·조선인의 “대학살” 이 외쳐진 츠루하시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2013년 2월 24일, 배외주의 단체는 오사카의 코리아 타운 츠루하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벌였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핸드 마이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⁴⁸

“바퀴벌레 초센놈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창녀, 그것이 조선인입니다” “재일 조선인은 불법입국이라는 범죄자입니다” “겁쟁이 초센놈 쳐 뒤져라 찌꺼기놈” “언제까지나 까불랑거리고 있으면은, 츠루하시 대학살을 실행할 것이야”⁴⁹

이러한 시위와 데모 시에는 경찰이 시위와 데모 현장에 임하고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3) “몰살” 과 “가스실 행” 이 외쳐진 신오쿠보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2013년 2월 9일, 배외주의 단체는 도쿄에 있는 코리아 타운 신오쿠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200여명이 참가한 시위와 데모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⁵⁰

⁴⁸ 본건 헤이트 스피치의 비디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xq8oAZ0sQLM>>에서 시청 가능하다.

⁴⁹ <https://www.youtube.com/watch?v=GoTBRpcaZS0>.

⁵⁰ 본건 헤이트 스피치의 비디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4ySNSac_X_w>에서 시청 가능하다.

“기생충, 바퀴벌레, 범죄자. 조선민족은 일본의 적이다” “구더기 한국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살인자, 강간마. 그것이 조선인이예요” “조선인을 몰살하라” “신오쿠보를 공지로하여 가스실을 만들어라. 가스실에 조선인·한국인을 쳐 넣어라”

이러한 시위와 데모에서도 임했던 경찰관은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비슷한 데모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신오쿠보에서는 2013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헤이트 스피치 데모·시위가 적어도 9건 있었다. 최근에는 2014년 5월 11일에 신주쿠의 신오쿠보 코리아 타운에서 불과 2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3. 피해 실태

배외주의적 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두선전에 의하여 부근에 거주하는 많은 재일 코리안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끼고 공포함에 쌓여있다. 또한 코리아계 학교에 다니는 코리안 학생에 대한 심리적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 부모 세대 또는 자신이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도 재일 코리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자기 자신을 향한 모욕과 공격으로 느껴져 공포감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재일 코리안 또는 코리아계 일본인의 젊은층(대부분 30대 이하)을 대상으로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회답자수는 약 200명)에 의하면 그 약 3분의 1이 “일본인이 무서워졌다” “일본인에게 재일교포라고 알리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재일교포라는 것이 싫어졌다” 라는 헤이트 스피치 회피경향, 자기공정관의 저하나 상실 등의 감상을 나타내고 있다.⁵¹

또한 헤이트 스피치를 이용한 데모나 가두선전 이후,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고객이 감소하고 코리아타운의 음식점·특산품점 등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의 신오오쿠보 코리아타운 일본인방문객은 2년전과 비교하여 3분의 1로 하락하고 1년반의 기간동안 150건 이상의 음식점·특산품점이 폐업 또는 오피스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하다.

상기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고 재일 코리안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 1항(b)(d), 4조에 의거하여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배외단체에게는 공적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더욱이 국내 법률의 적용 또한 피하는 것으로 배외주의 단체의 활동을 묵인·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다양한 활동을 취하고 있고 “트레이닝에서 외국인의 권리문제를 보다 빈번하게 취급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⁵²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 이상동안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외국인의 인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하여 왔지만 민족적 소수자 차별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⁵¹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재일 코리안의 헤이트 스피치와 인터넷 이용경험 등에 관한 재일 코리안청년 차별실태 설문조사(중간보고안)」 2014년 6월

⁵² 전계 주(28), 패러그래프 80.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는 최근에 와서 일본전국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배외주의적 데모 호소내용이나 참가인수, 참가단체, 일시장소, 경찰의 대응 등의 정보를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기에 충분 또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일본 정부는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근거로써 (1)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또는 신용훼손·업무방해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2)사인(私人)의 차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⁵³

그러나 피해자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제기되는 예는 상당히 적다. 통상의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수년은 걸리게 된다.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 측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재판을 하면 피해자가 공연화되고 그로 인해 또다른 헤이트 스피치 등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에서 차별적 동기가 고려되어 배상금액이 통상보다 가중된 예를 거의 없다.

또한 형법은 특정 개인을 향한 발언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코리안이나 중국인 그룹 등 불특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경이나 오사카의 코리안타운에서 되풀이된 "조선인을 몰살시켜라" 라는 등의 위협 발언을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만약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라 할지라도 현행법 틀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할 지 여덟지의 재량을 지닌 검찰관은 헤이트 스피치를 기소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더욱이 행정이나 경찰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위력업무방해죄 등의 현행 형사법이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배외주의 데모 참가자들에게 이를 엄숙히 적용하는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2013 년부터 활발화된 일본국 시민의 집단적인 반 레이시스트 운동에 대해서 조차 경찰은 수사·체포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 업무의 존재가 민간단체의 반 레이시스트 가두선전 활동의 기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많은 데모 현장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데모에 카운터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나란히 줄을 지어 헤이트 스피치 데모의 행렬을 지키고 있다. 카운터 행동을 하고 있는 자는 경찰관이 팔짱을 끼고 만든 원진의 안에 포위되어 항의를 하면 곧바로 5~6 명의 경찰관에게 헤이트 스피치 데모로부터 2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끌려간다. 끌려간 곳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도발행위는 그만두어라" 라고 강한 지시를 한 후, 그럼에도 멈추지 않을 경우 "이 이상 계속하면 체포하겠다" 라고 경고하는 등, 마치 행정이 배외주의 데모를 지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도 배외 데모·차별가두선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헤이트 스피치는 행정의 유효한 대처책이 강구되지 않고 비호·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⁵³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본 정부 보고심사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2001년 8월), CERD/A/56/18, 패러그래프 5, 6

V 제언

LAZAK 으로서는 이상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에게 다음의 권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

- 일본 정부는 비준을 유호하고 있는 인종차별철폐조약 4 조(a)(b)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조약 2 조 1 항 본문 및 동 조항(b)(d), 4 조(c)를 준수하고, 인종차별을 조장·선동하는 단체의 데모 및 집회,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금지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법률로 처벌하여야 할 위법행위 또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제정 등 헤이트 스피치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종차별철폐교육 계획을 입안·실행하여야 한다.

